

# 유소년 클럽 시스템 운영 세칙

## 제1조 목적

- ① K리그 유소년클럽시스템 운영 세칙(이하 '세칙'이라 함)은 대한민국 축구발전과 K리그 활성화를 위해 프로클럽의 유소년축구 보급 및 우수선수 발굴,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한다.
- ② 본 세칙은 'K리그 제2장 선수 규정' 및 '대한축구협회의 등록규정', '프로축구클럽 리그 참가자격 부여 등에 관한 규정'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한다.

## 제2조 유소년 클럽 구성

- ① 프로 클럽은 반드시 다음의 연령별 유소년 팀을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  - 1) 18세 이하로 구성된 유소년 팀(이하 'U18')
  - 2) 15세 이하로 구성된 유소년 팀(이하 'U15')
  - 3) 12세 이하로 구성된 유소년 팀(이하 'U12')
  - 4) 10세 이하로 구성된 유소년 팀(이하 'U10')
- ② 신생 프로클럽의 경우 프로가입 1년차에는 U10 또는 U12팀을 운영하며, 프로가입 2년차에는 상기 1항의 유소년 팀을 모두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프로클럽은 상기 1항의 팀들을 매년 협회 등록규정에 의거 등록하고, 그 증빙을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3조 유소년 클럽 운영

- ① 프로클럽은 유소년클럽시스템 운영에 관한 계획과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유소년클럽의 형태는 학교팀 또는 클럽팀 모두 가능하며, 어떤 형태든 클럽은 선수선발 및 이적, 지도자선임 및 관리 등 육성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.
- ③ 상기 제2조 1항의 팀은 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프로그램 칭 공식대회에 참가해야 한다. 단, 상기 제2조 1항 4호에 해당하는 팀은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할 의무는 없다.
- ④ 유소년클럽 운영을 위한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.
  - 1) 유소년 팀의 기술 및 인성교육 등을 총괄하여 기획하고 관리하는 육성책임자(AFCA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 보유자)를 두어야 한다.
  - 2) 연령별 유소년팀을 지도하는 감독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    - 가. U18세 팀 : AFC 또는 협회 B급 이상의 지도자자격
    - 나. U15세 팀 : AFC 또는 협회 B급 이상의 지도자자격
    - 다. U12세, U10세 팀 : AFC 또는 협회 C급 이상의 지도자자격

- ⑤ 프로클럽은 유소년클럽 운영을 위한 훈련시설을 1개 이상 소유하거나 임대 등의 방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. 해당 훈련시설에는 라커룸과 의료실을 갖출 것을 권장한다.
- ⑥ 클럽은 유소년선수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  - 1) 유소년 선수의 부상 및 병력 기록지를 포함한 관리 체계
  - 2) 유소년 클럽 전담의 응급처치 가능자(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응급구조사 1급 또는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자) 혹은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(KATA) AT자격증(또는 이에 준하는)을 소유한 의무 트레이너
  - 3) 유소년 클럽의 훈련 시설 인근의 병원 협력 체계

#### 제4조 유소년 선수의 선발 및 이적

- ① 연령별 유소년 팀의 선수 수는 협회의 등록 및 대회출전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구성한다.
- ② 타 프로클럽 유소년 선수의 스카우트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 단, 원 소속 프로클럽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이적(진학, 전학 목적)이 가능하다. 또한 제3클럽(학원 팀, 일반 클럽) 무단 이적 후, 타 프로클럽 유소년 팀으로의 이적 혹은 자유 계약을 통한 프로클럽 등록 및 이적 시에도 이전 소속 프로클럽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. (초등학교 6학년 선수부터 적용)
- ③ 프로클럽이 소속 유소년 선수의 육성 권리를 포기할 경우, 선수(본인 및 부모)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,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맹에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본 항 2호를 위반할 경우, 프로클럽은 해당 선수 선발 금지 및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3년간 분배 금지의 제재를 부과한다.
- ⑤ 유소년 선수의 선발 스카우트 비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.
  - 1) 프로클럽은 선수선발과 관련하여 양도처(학교 또는 클럽)에 축구용품 또는 공식후원금 형태로만 지원한다. 단, 양도처 지도자에게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제공할 수 없다.
  - 2) 연맹이 비용과 관련한 증빙을 요구할 경우, 비용 지급 관련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.
  - 3) 본 항 위반 시,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3년간 분배 금지의 징계를 부과한다.

#### 제5조 우선지명

- ① 상기 제2조를 충족한 프로클럽은 소속 유소년 선수들에 대해 우선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② 우선지명 대상은 산하 U18팀 소속선수(졸업예정자)로 클럽시스템에 3년(프로등록 시점으로부터 지난 3년간 연속) 이상 소속된 선수에 한한다.
- ③ 상기 제3조에 의거 유소년클럽을 운영하는 신생 프로클럽은 U18팀 첫 등록 시

소속된 선수에 한해서 3년 이상 소속되지 않은 선수에 대해서도 우선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

- ④ 우선지명 인원 수 제한은 없다.
- ⑤ 클럽은 매년 9월 말일까지 U18팀 소속선수 중 익년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우선지명을 완료하여야 한다.
- ⑥ 상기 제4조 ②항에서 정하는 서면합의가 없는 타 프로클럽 출신 유소년 선수는 우선지명 대상에서 제외된다.
- ⑦ 우선지명 되지 않은 선수는 10월부터 자율적으로 소속 클럽을 포함한 모든 프로클럽과 입단 협의를 할 수 있다.
- ⑧ 우선지명 된 선수는 반드시 지명 프로클럽에 입단하여야 한다.
- ⑨ 우선지명 선수는 K리그 등록 및 이적(국내 및 해외 이적 포함)시, 반드시 지명 프로클럽의 서면 동의를 있어야 한다.
- ⑩ 프로클럽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우선지명선수의 입단을 지연할 경우, 우선지명의 효력은 3년(우선지명일 익년 1월 1일부터)으로 한다.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우선지명의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. 단, 4년제 대학교 휴학기간, 실업 및 해외 프로/아마리그 등록 기간, 군대 기간은 3년의 효력 기간에서 제외한다.
- ⑪ 우선지명 철회는 프로클럽과 유소년 선수의 서면 합의로 가능하다.

## 제6조 기타

- ①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연맹, 협회의 관련 규정과 규정에 준하는 결정사항을 따른다.
- ② 본 세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프로 클럽에게 유소년 선수 선발금지 및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분배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, 연맹 상벌규정 12조의 징계를 병과할 수 있다.
- ③ 프로 클럽은 매년 아래의 각 호에 대해 서면으로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.
  - 1) 당해연도 유소년 클럽의 운영 계획
  - 2) U10팀(축구 교실 등)의 운영 현황
  - 3) 기타 연맹이 정하는 사항
- ④ 유소년 선수 관련 분쟁 발생 시, 연맹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한다.

## 부 칙

본 세칙은 연맹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